

인도네시아 광업투자가이드

2014
인도네시아
광업투자가이드



머리말

2009년 초 신광업법 도입 이후 4년, 전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상품의 수요 증가, 광업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발전 등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외국인투자자의 51% 지분 처분 규정, 미가공 광물에 대한 수출세 신설 등에서 보여지는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의 광업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며, 불확실한 정부규제와 불명확한 법규는 인도네시아 광업 투자 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장애요소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광업 관련 규제나 세법 규정에 대한 한글 해설 자료가 전무하여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이에 PwC Indonesia가 발간하는 Mining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책자를 기초로 저자가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너지분야 전문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틈틈이 정리한 각종 관련 규정들을 요약하여 본 책자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가 인도네시아 광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북은 아니지만, 광업 분야 투자 및 조세 관련 주요 사안을 위한 가이드북으로서 국내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광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벌 자원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뜨거운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신 모든 한국의 광업 투자자 분들께 이 책자를 바칩니다.

2014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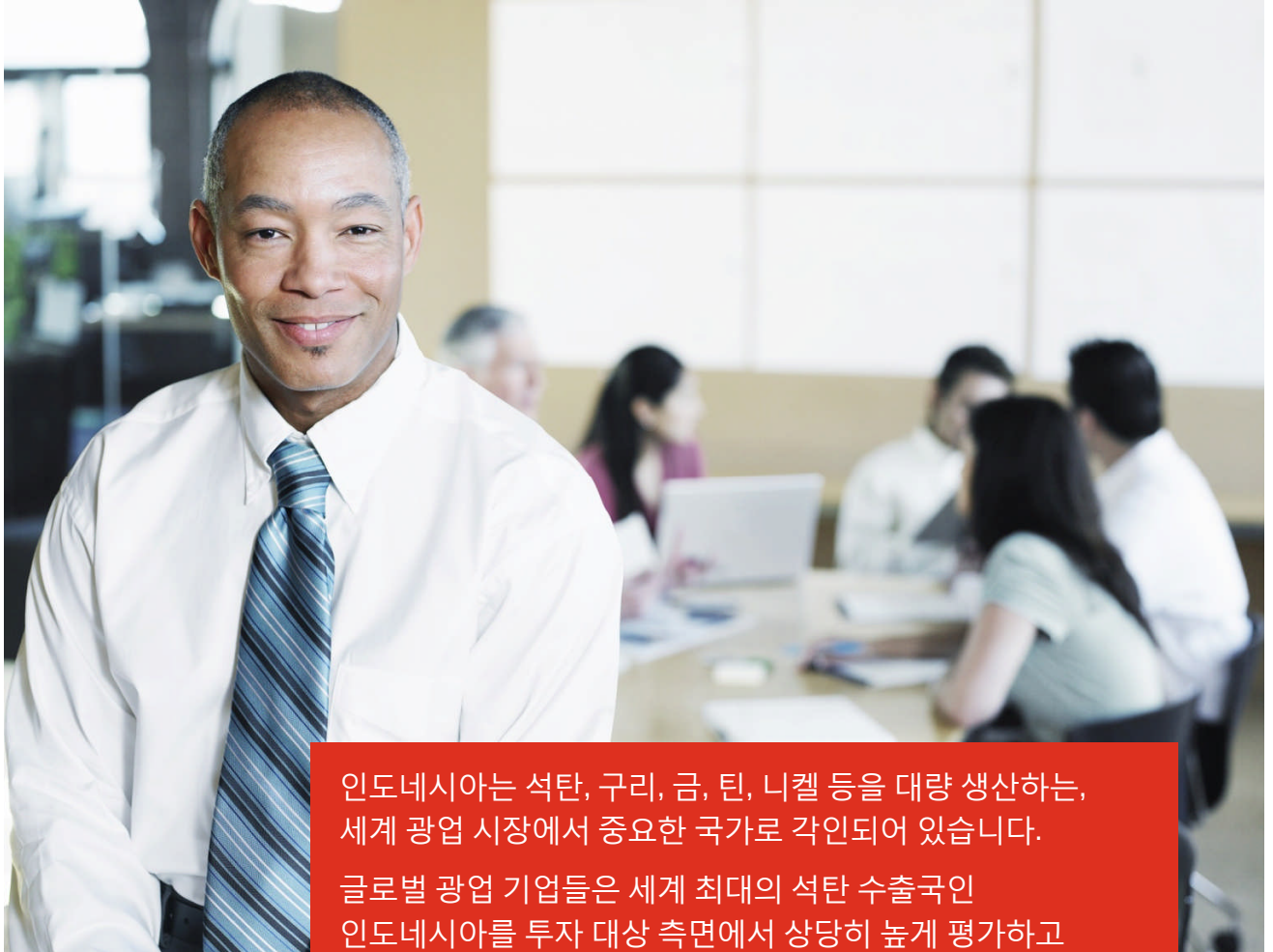
저자 김홍현

이 책자는 인도네시아의 광업투자자를 위한 참고 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세무·경영자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회 환경 변화를 적시에 본 책자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책자에 실린 회계·세무·경영자문·법률자문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나 다른 외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2013년 6월 자료들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Contents

01		
광산업 규제 체계의 개요		1
02		
광물 및 탄광업 규제 체재		4
03		
광물 개발 협정 (CoW)		20
04		
인도네시아 광업 분야 세제		29
05		
광업 투자 추가 규제 사항		40
Appendices		
A. 지방세		49
B. 에너지광물 자원부		50
C. 산업연합		51
D. Glossary		52

01 광산업 규제 체계의 개요



인도네시아는 석탄, 구리, 금, 티, 니켈 등을 대량 생산하는, 세계 광업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광업 기업들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를 투자 대상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광업 정책 및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Overview

인도네시아는 석탄, 구리, 금, 티, 니켈 등을 대량 생산하는, 세계 광업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광업 기업들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를 투자 대상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광업 정책 및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석탄 분야를 제외하고는 Greenfield 프로젝트를 위주로 제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9년 신광업법(New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4)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적용이 투자자들에게 규제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업법 도입 후 4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시행령 적용 지연 및 일부 시행령에 대한 실무 적용 해석이 엇갈리면서, 변화가 완벽히 적용되어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오래된 광물 개발 협정(CoW) 체계와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을 위한 Licensing 시스템은 신광업법 도입으로 인해 모두 바뀌었습니다. 신광업법은 새로운 지역 기반 Licensing 시스템 및 정부 개입을 통한 투명한 Licensing 허가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신광업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국가 광업 정책, 표준, 지침 및 기준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광산 승인 절차를 결정하는 것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개발, 관리, 평가 및 분쟁 해결에도 참여합니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광업 투자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광물 개발로부터 얻은 이익을 높은 수익성을 꾀하는 외국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균형 있게 나누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광업법하에서 중앙 정부는 비록 현재까지 광업 가능 지역에 대한 Mapping 작업을 모두 완료하지 못했지만, 채굴 가능 지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중앙 정부는 광업 가능 지역 결정에 대한 더 높은 통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임업과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해 채굴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과의 중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이한 목적의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지도 제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광업 가능 지역 Mapping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 License Holder가 하청업체에 광산 업무 전체를 하도급으로 계약하기 보다는 일부라도 자신이 직접 수행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광업 License Holder에게 더 많은 운영 책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인도네시아에 유보 및 재투자하는 행위는 시행규칙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연차 10년 이전까지 투자자들의 광업 사업허가 지분을 최대 51%까지 매각하여야 함
- 미가공 광물 수출 제약 및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가공처리 의무화
- 최소 물량 국내시장 판매 의무 절차 도입
- 석탄 및 광물과 같은 원자재 수출 시, 거래의 최소 금액을 정하는 가격 벤치마크 체제 도입
- 규제 초안에 의해 석탄 열량 5,700Kcal 미만 수출을 금지하고 저열량탄은 가공 및 Upgrade 의무화

최근 발표된 정부 규제는 신광업법의 실행에 대해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나, 광업 활동 가능 지역과 같은 발표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회수와 국내 가공처리 의무화와 같은 규제들의 경우 법규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들은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Contribution to Indonesian economy

광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득을 주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이득은 지역 경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업의 발전이 없었다면 일부 지역은 현재와 같은 규모와 속도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광업회사가 유일한 고용주일 때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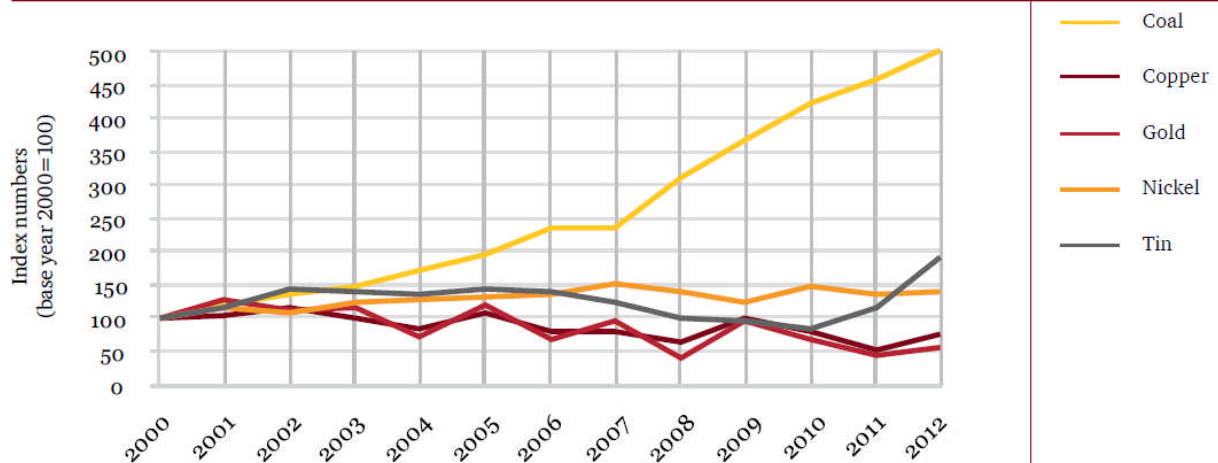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광업은 인도네시아 GDP의 약 4~5%정도 기여 했으나, Papua, Bangka-Belitung, West Nusa Tenggara and East Kalimantan를 포함한 많은 주의 지역 경제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규모의 광업 인프라 프로젝트 및 개선된 규제 환경을 토대로 앞으로 광업이 국가 GDP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석탄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리, 금, 티와 같은 기타 광물의 경우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광산 분야 투자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신광업법의 영향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보이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석탄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채굴 허가증을 좀 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석탄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석탄 생산자들은 프로젝트 증설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글로벌 원자재 수요로 인해 투자에 적합한 곳이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미해결된 신광업법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Coal and mineral production



Source: 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EMR") & PwC analysis

02 광물 및 탄광업 규제 체제



광물 및 석탄 광산 활동은 2009년 1월 12일에 제정된
신광업법(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 4/2009 ("Mining
Law"))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령은 기존의 모든
광물개발협정(CoW/CCoW)을 포함한 2009년 이전의
인도네시아 광업권 체제 관련 법령인 Mining Law No.
11/1967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The Mining Law

광물 및 석탄 광산 활동은 2009년 1월 12일에 제정된新光업법(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 4/2009 ("Mining Law"))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령은 기존의 모든 광물개발협정 (CoW/CCoW)을 포함한 2009년 이전의 인도네시아 광업권 체제 관련 법령인 Mining Law No. 11/1967을 대체하는 것입니다.新光업법은 규정의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시행방법의 내용을 제시하는 시행령에 의존하게 됩니다. 핵심 시행령의 일부분은 최근 공표되었지만, 명확성이 필요한 주요 규제 중 일부는 여전히 제정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도입된新光업법은 예전 인도네시아 광업 규제 체제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는 더 이상 계약기반 채굴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자를 위한 광물개발협정 (CoW/CCoW)과 광권(KP), 채굴권, 인도네시아 투자자를 위한 체제들이 단일화된 특정 광업지역 기반 License System으로 대체되었습니다.

新光업법은 지역 및 자원 종류를 기반으로 한 3가지 Mining License를 규정합니다.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zin Usaha Pertambangan ("IUP" or Mining Business Licence);
2.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IUPK" or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and
3. Izin Pertambangan Rakyat ("IPR" or People's Mining Licence).

인도네시아 국민의 KP License 소유권 제약과는 달리, 광업사업허가(IUP)는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 투자자 모두 소유할 수 있습니다.

新光업법은 다양한 시행령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가지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GR")이 다음 분야와 관련하여 공표되었습니다.

- Mining Areas ("GR22");
- Mining Business Activities ("GR23"), as amended in 2012 by Government Regulation No.24 of 2012 ("GR 24");
- Mineral and Coal Mining Direction and Supervision ("GR55"); and
- Reclamation and Mine Closure ("GR78").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EMR")에서 4가지 Ministerial 규정을 다음 분야와 관련하여 공표하였습니다.

- Mining Services ("PerMen 28");
- 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PerMen 34");
- Benchmark Price ("PerMen 17"); and
- Mineral Processing Activities ("PerMen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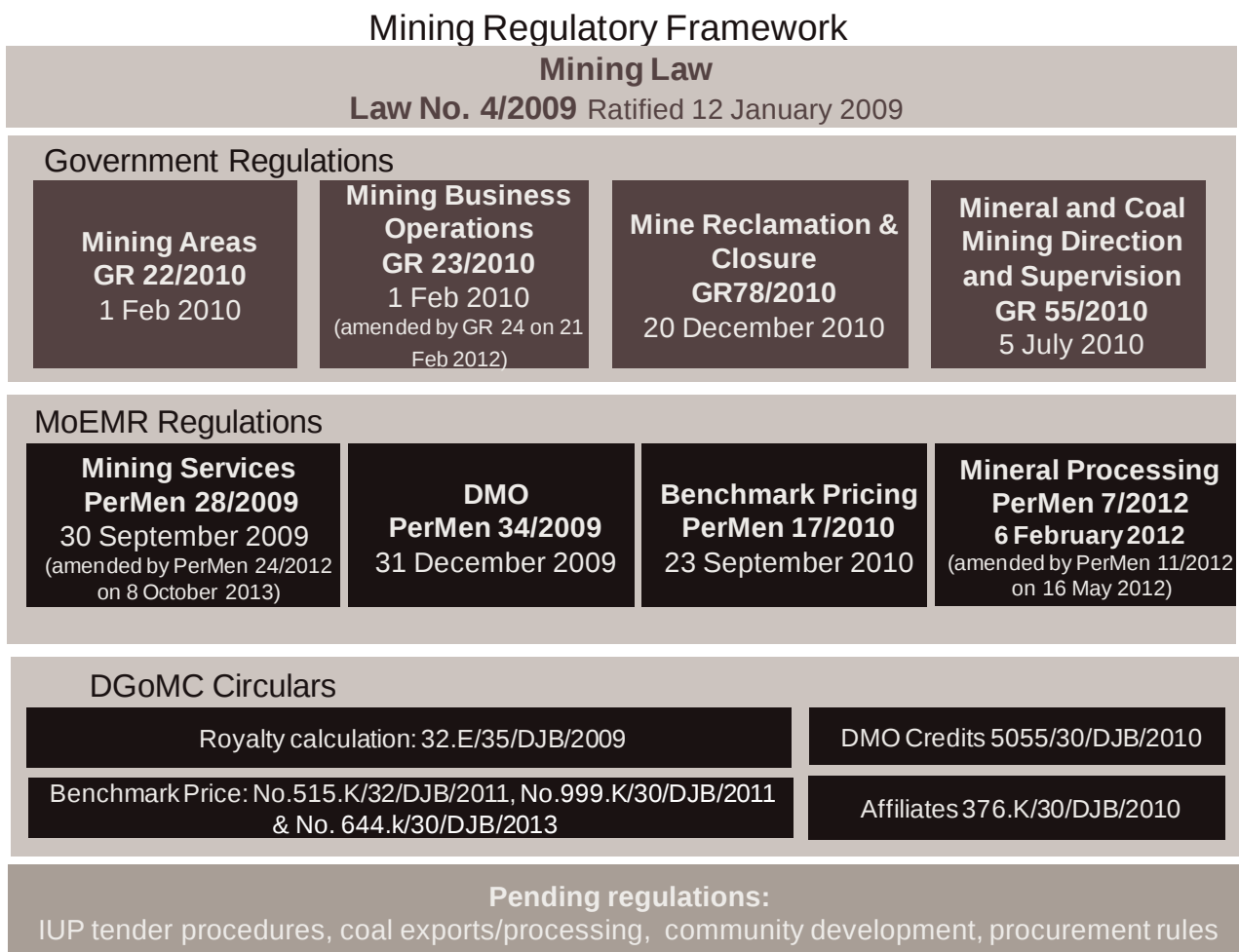
The Director General of Minerals and Coal("DGoMC")는 시행규칙(Circulation Letter)을 다음 분야와 관련하여 공표하였습니다.

- 로열티 계산(Royalty Calculation)
- 가격 벤치마크(Benchmark Price)

그러나, 일부 주요 정부 규정은 미제정상태입니다. 주요 미제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열량 5,700 Kcal 미만 수출 금지 및 저열량탄 Upgrade 의무화
- 광업사업허가(IUP) 입찰 절차
- 광업 지역 결정
- Operation Production IUPs and IUPKs 허가 세부 절차
- 인력 및 자본 조달
- 지역사회 발전 및 권한 부여

위의 규정 초안은 DGoMC에 의해 공표되었지만, 최종 확정 시기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규제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Legal Framework

Mining Areas

광업활동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광업 지역 (Wilayah Pertambangan – “WP”)을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광업사업지역 (Wilayah Usaha Pertambangan – “WUP”): 큰 규모의 상업위주 광업 지역
2. 국가전략을 위한 예비 사업 지역 (Wilayah Pencadangan Negara – “WPN”): 국가 전략을 위한 주 가용 채굴 매장량 지역
3. 주민 광업 지역 (Wilayah Pertambangan Rakyat – “WPR”): 작은 규모의 지역기반 광업 지역

WP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광업 가능 지역 Mapping을 해야 합니다. 확인된 지역은 광업만을 위함이 아니며, 산림업과 같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도는 5년에 한번씩 Update할 수 있습니다. 현재, Mapping은 진행 중이며, 지정 지역을 보여주는 최종 지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정부가 Mapping 작업을 통해 Mining License 리스트인 “Clean & Clear”를 제작한 것입니다. 리스트는 DGoMC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 유효하며, 리스트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리스트는 DGoM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까지 약 10,000개가 넘는 IUPs가 “Clean & Clear”상태로 인증되었습니다.

Mining Licences

광업지역 내에서, Mining License는 한 개 이상의 단체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광업사업허가 (“IUP”)는 WUP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입니다.
2. 특별광업사업허가 (“IUPK”)는 WPN 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3. 주민광업사업허가 (“IPR”)는 제한적인 투자 금액으로 WPR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IPR을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광업사업허가(IUP)와 특별광업사업허가(IUPK)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Ownership of Mining Licences

IUP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발행됩니다.

- 인도네시아 법규 하에 설립된 기업
- 법인 회사
- Partnership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개인

기업체는 인도네시아 자국민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PT Biasa" 또는 "PMDN")와 외국인 소유의 회사(PMA)를 모두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어야만 합니다. 기존 광업법(Mining Law No.11/1967) 하에서 광물개발협정허가(CoW/CCoW)는 내외국인 모두 보유 가능하였으나, KP는 내국인 투자자들에게만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광업법은 광업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외국 투자자간의 많은 차별을 제거했으며, 광업 분야에 100% 외국 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청(BKPM) 발행 Negative List 와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ne Mining License per Company

신광업법의 한 가지 특징은 비상장회사는 License를 한 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만이 License를 한 개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R23의 개정령인 GR24에서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경우에 광업사업허가(IUP) 또는 특별광업사업허가(IUPK)는 IUP/IUPK 소유 기관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양도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가적인 정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GR23의 경과규정에 의하면, 다수의 KP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는 IUP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License 신청은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GR24의 새로운 양도 규정은 경과규정에 준하여 회사가 IUP 양도를 통해 다수의 IUP를 소유할 수 있게끔 IUP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Exploration and Production Licences

IUP 또는 IUPK는 2개의 광업 활동 단계((i)탐사, (ii)생산 운영)에서 승인 됩니다. 각 단계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탐사사업허가(Exploration licence)는 WUP/WPN지역에서의 기초조사, 탐사 및 예비조사 활동을 허가합니다.
- 생산사업허가(Production licence)는 WUP/WPN 지역 내에서 건설, 채굴, 공정, 정제, 운반 및 판매를 허가합니다.

Authority to issue an IUP

IUP는 제안된 광물 지역과 그와 관련된 인프라에 따라, 지방정부(Regent/Governor) 또는 중앙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MoEMR))로부터 발행됩니다. GR24에 의하면, IUP를 외국인 소유 기관에게 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License를 승인한다고 되어있지만, 승인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진행되거나 혹은 IUP가 지방정부에 의해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GR24는 또한 광업사업허가(IUP)를 광물개발협정(CoWs/CCoWs)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탐사사업허가(Exploration IUP)

승인자	프로젝트 위치
장관	한 개 지역을 초과하여 Cover하거나, License가 외국인 소유 인도네시아 회사에 발행되었을 경우(i.e. a PT PMA company or converted CoWs/CCoWs)
주지사	주 내에 있으나 2개 이상 군을 Cover할 경우
시장/군수	지역이 도시 또는 군내에 있을 경우

생산사업허가 발행은 공정 플랜트, 운반 도로, 저장고, 항만 시설과 같은 광업 인프라 위치와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에 의해 발급됩니다.

생산사업허가(Production IUP)

승인자	프로젝트 위치	환경적 영향
장관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주보다 많이 위치해 있거나, License를 PT PMA 회사에 발행했거나, 광물개발협정 (CoWs/CCoWs)를 전환 시킨 경우	시장/군수와 주지사의 추천으로 환경적 영향을 한 개의 주보다 많이 주었거나, License를 PT PMA 회사에 발행했거나, 광물개발협정 (CoWs/CCoWs)를 전환 시킨 경우
주지사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군보다 많이 위치해 있으나 한 개의 주 내에 있을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환경적 영향을 한 개의 군보다 많이 주었지만, 한 개의 주 내에 있을 경우
시장/군수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도시 및 군내에 위치했을 경우	장관과 주지사의 추천으로 환경적 영향을 한 개의 도시 및 군에 주었을 경우

프로젝트 위치와 환경적 영향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면 어느 절차를 통해 생산사업허가가 승인이 될지 불확실합니다.

많은 광업 프로젝트는 채굴, 공정, 운송, 항만시설이 다른 군지역 또는 주 내에 있기 때문에, 주지사나 장관이 채광사업허가 재발급에 있어서 예전 KP Licensing 시스템 보다 더 많은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uthority to issue an IUPK

지역적 운영 범위와 상관없이, IUPK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됩니다. WPN의 개발은 국유 기업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수용되지 않을 경우 IUPK는 입찰 과정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Licence Terms and Extensions

신광업법과 그와 관련된 규정은 Mining License를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탐사사업허가	생산사업허가	연장기간
석탄	7년	20년	10년 x 2
금속 광물	8년	20년	10년 x 2
비금속 광물	3년	10년*	5년 x 2*
암석	3년	5년	5년 x 2

* 특정 비금속 광물은 20년 채광사업허가와 최고 10년 연장 두 번 가능함.

	탐사사업허가(IUPK)	생산사업허가(IUPK)	연장기간
석탄	7년	20년	10년 x 2
금속 광물	8년	20년	10년 x 2

Licence Areas

GR23의 중요한 점은 석탄과 금속 광물의 생산사업허가 규모를 탐사기간 3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비금속 광물과 암석은 이보다 적음). 생산사업허가가 발행되면, 생산 단계에서의 최대 면적은 줄어듭니다.

탐사사업허가(IUP)		GR23에 의해 탐사 3년후 축소	생산사업허가
석탄	5,000ha – 50,000ha	최대 25,000ha로 줄여야함	최대 15,000ha
금속 광물	5,000ha – 100,000ha	최대 50,000ha로 줄여야함	최대 25,000ha
비금속 광물	100ha – 25,000ha	12,500ha (2년 후 적용)	최대 5,000ha
암석	5ha to 5,000ha	2,500ha (1년 후 적용)	최대 1,000ha

탐사사업허가(IUPK)		GR23에 의해 탐사 3년후 축소	생산사업허가(IUPK)
석탄	최대 50,000ha	최대 25,000ha로 줄여야함	최대 15,000ha
금속 광물	최대 100,000ha	최대 50,000ha로 줄여야함	최대 25,000ha

IUP/IUPK는 광물 또는 석탄의 한 종류만으로 발행됩니다. 다른 광물이 발견될 경우, 관련 정부기관이 다른 광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IUP/IUPK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탐사사업허가 소유자는 추가 광물 허가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보다 관련 정부기관에 허가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Tender Requirements for New Mining Licences

새로운 IUP와 IUPK는 직접 지명보다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관은 IUP에 입찰할 수 있으나, IUPK허가는 국유 기업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낙찰된 기관은 특정 석탄이나 광물에 대한 탐사 IUP/IUPK를 발급 받습니다. 입찰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며, 관련 정부기관이 KP를 직접 승인했던 과거 광산법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입찰 과정 및 선정 기준의 내용은 GR23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세부내용은 정부령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Tender Procedures

입찰 과정은 입찰 시작일 3개월 전에 발표해야 합니다. 3단계의 정부(중앙정부, 주정부, 군수)가 입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i.e. a PT PMA).

입찰에는 두 명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해야만 하며, 입찰자가 한 명 이하일 경우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

재입찰에서도 복수의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격이 사전 입찰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License가 단독 입찰자에게 주어집니다.

Selection Criteria

입찰 선정기준인 "Price Bid and Technical Considerations"조항이 GR23에 있으나, 이 광범위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Technical Considerations"에 따르면, 기술적, 행정적, 재무적 조건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입찰 과정 중에 제출되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최소 3년간의 광업 경험 증거자료 (새로 설립된 회사일 경우, 모회사나 자회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대체가능)
- 광업/지질학 전문 분야에 최소 3년의 경험이 있는 인원 최소 1명 보유
- 탐사시부터 4개년도 작업 계획서 제출

입찰자는 새로 발급되는 License의 Data 및 정보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입찰금액의 10%를 국유은행에 보증금으로 현금예치하거나, 허가 만료의 경우 Data 또는 투자금의 10%를 보증금으로 현금예치해야 합니다. 낙찰된 입찰자는 5 영업일 이내에 입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신광업법 및 관련 규정은 중앙정부가 각 광업 생산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DMO 체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도입한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정책은 자국 수요 증가, 특히 석탄 수요 증가에 대한 국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DMO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PerMen 34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PerMen 34에 의하면, DMO는 모든 종류의 석탄 및 광물에 적용됩니다. 광산회사는 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DMO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PerMen 34와 GR23에는 DMO 비율 규정이 없으며, 대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장관이 특정 연도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1. 국내 이용자들은 전년도 3월까지 예측치를 제출해야함
2. 장관은 제출된 국내 예측치와 광산회사들의 생산 계획을 계산 및 검토 수행함
3. 장관은 최소 DMO비율에 대해서 전년도 6월까지 Decree를 발행하며, 이 Decree에는 국내 이용자들과 그들의 수요가 기술 되어 있음
4. 허가증 발급 기관 (Minister, Governor, Mayor/Regent)에 당해연도 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DGoMC는 DMO 비율에 대해서 확약해야함

PerMen 34는 광산회사가 DMO를 초과했을 경우, DMO 기준치에 못 미친 회사에게 Credit으로 판매/양도할 수 있는 'Cap and Trade'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DMO Credit의 가격 메커니즘은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DMO Credit의 거래 메커니즘은 2010년 11월 29일 제정된 Circular 5055/30/DJB/2010에 의해서 결정되고, DMO Credit은 DGoMC의 승인 하에 광업회사 간에(광업회사를 대신해서 Credit을 소유하고 있는 트레이더 포함)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정 당시 정부는 일부 선별된 석탄 회사만이 최소 석탄 DMO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3년에는 74개의 석탄 회사들이 74.32 Million Ton을 국내에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생산 예상량의 약 20%). 최근 몇 년간 국내 석탄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DMO 석탄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oal and Mineral Price Benchmarking

GR23은 MoEMR이 광물과 석탄 판매 공시 가격 책정 체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PerMen 1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DGoMC를 통해서 MoEMR은 석탄 및 금속 광물의 벤치마크가격 결정을 담당하고, 주지사나 군수(또는 시장)는 비금속 광물 및 암석 벤치마크 가격 결정을 담당합니다.

벤치마크가격은 FOB Vessel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도 시점이 FOB Vessel(i.e. FOB barge or CIF) 시점과 다르면 벤치마크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가격에는 선적, 측량, 보험, 환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금속 광물의 경우에는 위의 조정가격에 Treatment와 정제 비용 추가).

벤치마크 가격은 정부 로열티 계산시 최저 가격 역할을 합니다. 실제 판매 가격이 벤치마크가격보다 높다면, 정부 로열티는 실제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에, 실제 판매가격이 벤치마크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 로열티 계산은 벤치마크 가격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특정 석탄 종류(e.g. fine coal, reject coal, and coal with specific impurities)와 특수 목적을 위한 석탄은 DGoMC의 사전 승인하에 벤치마크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가격은 즉시인도판매(Spot Sale)와 장기 판매(Long-Term Sale)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 판매의 경우 PerMen 17에 의해 광업회사들이 12개월마다 판매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의 경우, 장기 판매 가격은 이전 3개월치 가중평균 벤치마크가격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석탄 회사는 장기 판매 동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DGoMC에 제안 판매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벤치마크가격은 매달 업데이트되며,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석탄의 경우 글로벌 및 인도네시아 석탄 인덱스에 기반). 현재, DGoMC에 의해 발행된 벤치마크가격은 Thermal Coal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No.515.K/32/DJB/2011 규정 (최근 No.644.k/30/DJB/2013으로 개정)에 따라, DGoMC는 Coking Coal 벤치마크 가격 계산 공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Divestment

신광업법은 외국 주주들이 그들의 지분을 광산채굴 5년째부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R23의 개정령 GR24에 따르면, 외국 주주들의 지분 51% 처분을 생산 개시 후 10년이 도래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최소 지분 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시작 연도	최소 지분 처분 (연말 기준)
6	20%
7	30%
8	37%
9	44%
10	51%

지분 매각은 중앙정부, 주정부, 시/군정부, 국유기업, 국내 개인사업체 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처분에 대한 특정 메커니즘의 추가적인 내용은 Ministerial Regulation에 의해 규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현 정부 규정은 처분단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가격 계산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다른 불확실한 측면은, 투자 처분 기한 이전에 인도네시아 개인주주가 (처분)필요 지분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도 여전히 정부기관에 지분을 처분할 의무가 남아있는 것인지와, IUP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상장기업에게 투자 처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투자 처분 조항이 CoW/CCoW 소유자들에게 적용되진 않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조건들이 적용될 것이며, IUP 계약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Mandatory In-country Processing

신광업법 하에서는, IUP/IUPK Holder들은 광물과 석탄의 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 및 정제과정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IUP/IUPK Holder들은 이미 Special Production Operation IUP/IUPK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게 가공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Special Production Operation IUP/IUPK Holder들은 또 다른 IUP/IUPK Holder들로부터 가공 및 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석탄의 경우, GR23에서 규정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은 활동입니다.

석탄 분쇄	성형탄	배합	선탄
석탄 액화	석탄 가스화	Coal Upgrading	Coal Water Mixing

광물의 경우, MoEMR이 국내에서 가공해야 하는 규정, Ministerial Regulation No.7/2012를 2012년 2월 6일에 발행하였습니다. PerMen 7은 2012년 5월 6일부터 광석 및 미가공 광물 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공 필요조건의 적용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단계	기한
탐사사업허가 소유자 또는 CoWs 탐사 및 예비조사 단계	2015년 2월 6일
건설업 생산사업허가 소유자 또는 CoWs 건설 단계	2016년 2월 6일
생산업 생산사업허가 소유자 또는 CoWs 생산 단계	2014년 1월 12일

Permen 7 규정에 의하면 IUP Holder들이 미가공 광물을 가공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경우 제 3자에게 가공을 의뢰할 수 있으나, 비경제적일 경우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 3자는 다른 IUP Holder이거나 독립적인 가공업자일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Ministerial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는 PerMen 7 규정상 광물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담은 Decree 29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Decree에 의하면 특정 요건을 충족한 광업회사가 무역부의 수출 승인을 받을 경우 미가공 광물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설비 운영 설립은 시간 및 투자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칙의 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Decree 29와 같은 시행령 발표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미가공 광물 수출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된 인도네시아의 전력 환경상 가공설비를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는 점, 특정 광물의 경우 제한된 매장량으로 인해 국내 가공이 경제성이 없는 점, 아직 광물별 매장량에 대한 Mapping이 완료되지 않은 점, 가공 설비에 대한 지분 매각 규정이 불확실한 점 등 실무 적용상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 업계와 정부간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CoW의 경우에는 특별법(lex specialis) 규정에 의해 PerMen 7이 계약 만료 전 또는 IUP 연장 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정부와 CoW 재협상 시 미가공 광물 가공 규정의 적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ineral Export Tax

미가공 광물 수출 금지 규정과 더불어 MoF Regulation No.75/PMK.011/2012("OMK75")가 공표되어 21개의 미가공 광물 및 특정 비금속광물의 수출 시 20%의 수출세가 부과됩니다 (석탄 제외).

Mineral Mining Production Limitation Regulation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석탄과 광물 자원은 재생에너지원이 아니고, 국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공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필요 시 석탄 및 광물 생산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 주지사 및 시장/군수가 생산 제한 규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불이행시 경고, 사업 정지,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Mining License 취소와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Mining Support Services

광업 서비스 사업 역시 신광업법 및 PerMen28에 의해 규정됩니다. PerMen 28은 IUP 또는 IUPK Holder들이 더 이상 모든 활동을 위탁할 수 없으며, 석탄/광물을 직접 채굴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Men 28은 광업 서비스 사업 종류 리스트를 규정하고, 핵심과 비핵심 광업 서비스 사업을 구분합니다. 또한, 광업 서비스의 관계사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사업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Men 28에 따르면, IUP/IUPK Holder들은 채굴, 공정, 정제는 직접 영위해야 하나, 컨설팅, 계획, 테스트, 운송 등의 활동은 광업 서비스 사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Classification of Mining Services and Mining Service Companies

IUP/IUPK Holder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Mining Service Business	Non-Core Mining Service
Licence: Mining Services Business Licence/ <i>Izin Usaha Jasa Pertambangan ("IUJP")</i>	Licence: Registration Letter/ <i>Surat Keterangan Terdaftar ("SKT")</i>

광산 서비스는 지역회사 또는 인도네시아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PerMen 28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업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사	Regency/Province에 위치하고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인 소유 회사
인도네시아 회사	인도네시아 법적 회사로서 지분 전체를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나 해외에서 운영되는 회사
Other Company	인도네시아 법적 회사로, 지분 일부 또는 전체를 외국인이 소유

여기서 '지역'의 의미는 광산회사들이 지역 제품, 지역 하도급 업자, 지역의 노동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striction on the Use of Affiliates/Subsidiaries

IUP/IUPK Holder가 자회사와 관계회사를 이용하려면, DGoM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회사와 관계회사는 IUP/IUPK Holder가 직접 지분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2010년 5월 10일 DGoMC Regulation no. 376.k/30/DJB/2010에 의거).

- IUP/IUPK Holder가 광산 서비스 관계회사 지분 25%이상 소유시
- IUP/IUPK Holder가 광업 서비스 관계회사에 직접 재무와 운영 부분을 통제하며 지분 50%이상 소유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상기의 경우, IUP/IUPK Holder는 광산 서비스 관계회사의 재무와 운영 책임자 또는 그와 비슷한 레벨의 인원 임명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군내 또는 주내에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 및 IUP/IUPK Holder가 입찰공고를 냈으나 인도네시아 서비스 회사가 기술적 또는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UP/IUPK Holder는 관계회사 이용 시 가격책정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Prohibition on receiving any fees from Mining Services Company

IUP/IUPK Holder는 광산 서비스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Mining License Holder가 모든 광업 운영을 제 3자에게 맡기고 이익이나 석탄/광물 생산량을 기초로 한 보상을 제 3자에게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Transitional Provisions for existing Mining Services Arrangements

PerMen 28 제정 이전에 광산회사가 이미 광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PerMen 28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e. 30 September 2012).

기존의 모든 IUPJ들은 만료일까지 유효하지만, PerMen 28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Fiscal Regime

신광업법에는 세금 또는 다른 재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IUP/IUPK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른 세금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UP/IUPK와 재정 조항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부 CoWs/CCoWs에서 특별법(*lex Specialis*)이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은 없으며 규정의 적용은 여전히 불명확 합니다. IUP/IUPK 조항이 세법에 우선하는 것 또한 실무상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광업 세무 이슈에 대한 세부내용은 Section IV을 참조하십시오.

Royalties

모든 IUP/IUPK Holder들은 생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광업 규모, 생산 레벨, 광업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석탄과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 수익금에 대한 적용 비율이 달라지며, 이러한 방식은 신광업법 하에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IUPK 소유자들은 순이익의 10%를 로열티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로열티 중 40%를 받으며, 나머지는 관련 주와 군이 나눠 가집니다. 순이익을 기초로 추가적인 로열티가 결정된 이후부터, 정부는 IUPK의 자본지출과 광업 운영비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인도네시아 원자재의 생산 로열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CoW/CCoW/CCA(Coal Cooperation Agreement)의 경우, 관련 계약서를 참조해 주십시오(Section III).

원자재	생산 로열티 세율
Coal	
- Open Pit	3% - 7%
- Underground	2% - 6%
Nickel	4% - 5%
Zinc	3%
Tin	3%
Copper	4%
Iron	3%
Gold	3.75%
Silver	3.25%
Iron Sand	3.75%
Bauxite	3.75%
Aluminium	3%
Sponge iron/pig iron	2.50%

Transfer Restrictions

IUP/IUPK를 타인에 양도하는 것은 신광업법 하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령(GR 24)에 따르면 이미 IUP/IUPKs를 보유한 회사가 최소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IUP/IUPKs 보유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IUP/IUPKs 보유법인이 51%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게만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IUP/IUPK 회사의 지분 양도는 일정 탐사 단계 이후에 가능합니다 (적절 단계는 GR에서 규정할 것임). 양도는 관련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입법 조항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장외거래의 지분 양도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Reclamation and Mine Closure Guarantees

2010년 12월 20일, 정부는 탐사사업허가 및 채광사업허가에 대한 개간(Reclamation) 및 폐광 후 활동 관련 Government Regulation No.78/2010 ("GR No.78")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5월 29일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발행한 Ministerial Regulation No.18/2008의 업데이트입니다.

IUP-Exploration Holder의 경우, 다른 조건과 함께 탐사 작업 계획 및 예산 제출시, Reclamation 계획도 포함시켜야 하며, 국유 은행에 Reclamation 보증에 대한 일정금액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IUP-Production Operation Holder의 경우 다른 조건들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1. Reclamation 5개년 계획
2. 폐광 계획
3. Reclamation 보증에 대한 공동 예금 계좌, 정기 예금 국유 은행 예치, 은행 보증 및 회계상 충당부채
4. 폐광 보증(Post-Mine Guarantees)을 위한 정기 예금 국유 은행 예치

Reclamation이나 폐광보증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IUP 보유자는 Reclamation과 폐광 후 활동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임시규정 GR No.78은 CoW/CCoW Holders 또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Reclamation 및 광산폐쇄 보증은 장관, 주지사, 시장/군수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Penal Provisions

신광업법은 IUP/IUPK Holder의 불법 채굴과 같은 위배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시, IUP/IUPK 취소와 구금을 포함한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spute Resolution

IUPs/IUPKs에 대한 분쟁은 법정 절차와 현행법에 따라서 국내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Further Implementing Regulations

신광업법은 모든 규정 적용을 2010년 1월 11일 제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필수 시행규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정부에 의해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ansitional Provisions

KPs

기존의 모든 KPs는 GR23을 기반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 IUP License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광업법에는 KPs의 전환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전환 자체는 비교적 쉬운 작업이지만, 시행규칙의 영향으로 인해 신광업법 체제하에서 과거 광업 서비스 구조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GR23에 의하면, 다수의 KP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IUP의 전환 이 후에도 신광업법 하에 KP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CoWs/CCoWs/CCAs

기존의 모든 CoWs/CCoWs/CCAs ("Contracts")는 만료일까지 지속되며, 입찰 없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계약상의 추가연장도 가능함). 그러나 연장된 License는 CoW 체제가 아닌, IUP 시스템에 의해서 승인됩니다.

기존 Contracts의 내용은 유효하지만, 법 제정 5년 안에 광석의 국내 가공 및 정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활동을 시작한 Contract Holders는 신광업법 제정 1년 이내에 계약한 지역 전체에 대한 광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신광업법에 의해 계약 지역이 IUPs에게 허가된 지역만큼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광업법은 1년 이내에 기존 계약 조항들을 정부 소득 관련 조항(정의 되어있진 않지만, 정부 부과금과 로열티와 같은 세외 정부 부과금으로 추정)을 제외하고는 신광업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이 신광업법의 어떤 조항을 준수하게 되어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해야 할 범위로 투자처분 의무, 광업 지역 Re-sizing, 생산 기간 축소, 관련 광업 도급업자 이용 금지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신광업법의 경과규정이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법률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부분입니다. 불행히도, 결과는 2개의 상충되는 조항으로 나올 것이며, 이는 정부 세수 측면과 기존 Contract 권리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안이 Contract을 체결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며, 경과규정 관련 정부의 설명이 명확해 지지 않는 한, 기존 계약자들의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0년 1월 10일 발행된 Presidential Decree No. 3/2012에 의거 대다수의 CoW/CCoW Holder들과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Coordinating Minister for Economics Affairs에서 책임자를 선정하고 여러 장관을 축으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계약을 신광업법에 준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초점은 광구 규모, 세금 및 로열티, 광업 서비스 도급업자의 사용, 가격 벤치마크, 광구 폐쇄 및 개간, 국내 가공, 최소 투자회수 요건 등입니다.

Outlook

위의 내용들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新光업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新光업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인도네시아 광업 체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모든 시행규칙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나서야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新光업법 제정 후 4년이 지났으나,新光업법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추가 시행규칙이 요구되며, 세부내용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시행규칙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新光업법 조항들은 일부 투자자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IUP에 대한 직접 지분 인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분야의 투자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新光업법이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프로젝트에 대한 CoW 시스템의 장기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생산 개시 후 10년이 되는 해까지 51%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 특히 처분 시 가치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oW에 일반적으로 규정된 특정조항이 없이,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법체계의 효과적 작동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위의 우려사항들을 극복하고 광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3 광물 개발 협정 (CoW)



광업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위한 CoW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현대 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6년에 도입된 CoW 시스템은 지난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변화하는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현대화되었습니다.

General Overview and Commercial Terms

Contracts of Work (“CoW”)

광업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위한 CoW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현대 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6년에 도입된 CoW 시스템은 지난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변화하는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현대화되었으며, 현재까지 7세대의 CoW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新光업법은 새로운 CoW Licensing 체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CoW는 약정된 만기날짜까지 유효하며, 만기가 지나면 새로운 IUP Licensing 방식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될 내용은新光업법 이전의 협약된 CoW에만 적용되며,新光업법에 맞추어 정부의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이전 CoW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광산업 활동은新光업법의 IUP 체제에서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CoW는 에너지광물자원부 Decision Letter No. 1614/2004에 의해 규제됩니다. 본질적으로 CoW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회사와의 종합계약입니다. 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나, 만약 100% 외국인 소유라면 후에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인도네시아인이 대부분 CoW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CoW는 탐사, 생산 전 개발, 생산, 폐광을 포함한 광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회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특정 지리적 지역(the “Contract Area”)에 적용됩니다.

CoW회사는 오일, 가스, 석탄, 우라늄 이외 CoW 지역 안의 모든 광산업을 위한 유일한 사업자이며, 탐사, 개발, 생산, 정제, 가공, 보관, 운송, 판매와 같은 활동 등을 통제,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CoW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기간 (years)	연장 가능기간 ¹
기초 조사 ¹	1	6개월 – 1년
탐사 ²	3	1 – 2년
예비 조사	1	1
건설	3	-
생산	30	20년 혹은 정부가 허가한 기간

1) CoW세대에 의존.

2) 1세대의 경우, 기초조사부터 예비조사까지의 최장기간은 18개월이었고, 6개월 연장 가능

CoW에서의 중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 의무; 수출입 기관; 마케팅; 재정적 의무; 리포팅 조건; 기록; 조사; 인도네시아인의 고용 및 트레이닝; 인도네시아 공급자 우대; 환경의 관리와 보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역 협력;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

이와 같은 중요한 고려사항들은 계약서에 적절하게 표기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산업에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CoW는 모든 세금, 로열티, 다른 재정적 요금의 내용을 다루며, 계약 지역 내의 확정채굴료; 생산 로열티; 미지급 법인세; 고용인의 개인 소득세; 배당, 이자, 임차료, 로열티등에 대한 원천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수입관세; 그리고 땅과 건물에 대한 세금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Coal Co-Operation Agreements (“CCA”) and Coal Contracts of Work (“CCoW”)

CCoWs는 과거 MoEMR Decision Letter No. 1614/2004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이후, 석탄광산업은 CoW 구조를 통해 일반적인 광산업에 가까워 졌습니다. 두 세대의 CCAs(First and Second Generation Contracts)와 한 세대의 CCoW(일반적으로 3세대 CCoW로 여겨지는)가 있습니다.

CCA 1세대는 인도네시아 국유 광산 기업인 PT Tambang Batubara Bukit Asam (현, PT Bukit Asam Tbk or “PTBA”)와 국영기업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맺어진 Principle Regulation for Coal Co-operation Agreement를 규정한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No.49/1981, 1981년 10월 28일 제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No.49/1981)은 1993년 2월 27일 2세대를 규정하는 Presidential Decree No. 21/1993로 개정되었습니다. CCoW 3세대는 Presidential Decree No. 75/1996에 따라 2006년 9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Coal Co-operation Agreements

CCA와 CoW 시스템의 주요 차이점은 CCA의 경우 외국의 광산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국유 탄광 회사(PTBA)에게 도급업자(Contractor)로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 CCAs는 CCAs에 대한 PTBA의 권리 및 의무를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광물자원부로 양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CCA에 의해 석탄 도급업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량의 86.5%를 소유할 수 있으며, 광산 탐사, 개발, 생산관련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과거 PTBA)는 나머지 생산량인 13.5%에 대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1996년 9월 25일에 발행된 Presidential Decree No. 75/1996에 의하면, 도급업자는 판매비를 공제한 판매금액의 13.5%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정부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CA 1세대의 경우, 도급업자들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권리 및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었으나, 석탄 도급업자를 통해 구매한 장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소유였습니다. CCA와 CCoW의 2, 3세대의 경우, 도급업자가 구매한 장비들은 도급업자의 소유물로 유지됩니다.

CCA 1세대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주주들은 인도네시아 국유기업 및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영 10년 후에는 외국 주주들의 회사 지분이 최대 49%까지 감소됩니다.

Coal Contracts of Work

CCoW하에서 광산회사는 사실상 석탄생산의 권리를 100%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출의 13.5%를 로열티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지불 해야 합니다.

CCA와 CCoW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기간 (years)	연장 가능기간 ¹
기초 조사	1	1
탐사	3	3세대는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른 세대에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음
사업 타당성 조사	1	3세대는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른 세대에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음
건설	3	-
생산	30	-

Fiscal Regime under CoW, CCoW and CCAs

CCA 2세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CoW/CCoW/CCA(Contractor) 세대들은 모두 계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의 세법 및 다른 법률과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과거 법 규정들이 현재 광산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세대 광산 사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는 반드시 이러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세대들의 Contract에는 외국 주주들의 투자 처분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re-Contract of Work Expenses

Contract 회사의 주주들은 법인설립 이전에 상당한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현 주주로부터 Contract 회사에게 법인설립 이전의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이전시킬 수 있으며, 생산 시작시점부터 상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MoEMR와 DGT(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가 승인한 공인 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ploration and Development

탐사 및 개발 단계는 계약 지역(Contract Area)의 포기/양도(Relinquishment)를 위한 의사결정 요소와 유사합니다. 이 섹션은 기초 조사, 탐사, 사업 타당성 조사, 건설단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Contract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MoEMR 은행 계좌에 US Dollar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다음의 사항들이 완료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조사 기간이 끝났을 경우(50%)
- 탐사 단계 완료 후, 12개월 안에 지질도(Geological Map)를 Ministry에 제출한 경우 (50%).

CoW의 1세대 또는 CCoW의 3세대의 경우, 보증금은 다음의 사항들이 완료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조사 기간이 끝났을 경우(25%)
- 탐사 첫해의 경우 (25%)
- 탐사 단계 완료 후, 12개월 안에 지질도(Geological Map)를 Ministry에 제출할 경우(50%)

생산준비 단계 중에는 Contract을 체결한 모든 회사들은 분기별로 경과보고를 MoEMR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하에 모든 회사들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금 및 세부사항들을 MoEMR에 보고해야 합니다.

Contract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환경복원, 인도네시아 국민의 고용 및 교육, 인도네시아 공급자들의 우선적 사용, 지역사회를 위한 인프라 제공에 대하여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Contrac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CoW	CCA/CCoW
기초 조사 단계 회사는 기초 조사가 진행될 동안 합의된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사용내역 및 지출금액을 보고해야 하며, 최소 Contract Area의 25%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기초 조사 단계 회사는 기초 조사가 진행될 동안 합의된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사용내역 및 지출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2세대 및 3세대의 경우, 최소 Contract Area의 25%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하고, 1세대의 경우 40%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탐사 단계 회사는 탐사 활동에 대하여 합의된 연간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탐사 시작 시, 회사는 연간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MoEMR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탐사 종료시점에 MoEMR에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Geological 그리고 Metallurgical Investigation 의 요약 및 관련 모든 데이터 - Contract Area의 지질도(Geological Map). 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5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탐사 단계 회사는 탐사 활동에 대하여 합의된 연간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탐사 시작시, 회사는 연간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MoEMR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탐사 종료시점에 MoEMR에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드릴 구멍, 채취장, 샘플 순도 분석 의 사본 - Contract Area의 지구 물리학(Geophysical)지도 및 지질도(Geological Map) 사본. 3세대의 경우, 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5% 미만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1세대 및 3세대의 경우, 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0~4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 사업 타당성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환경 영향 조사를 포함한 조사내용을 MoEMR에 제출하고, 시설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조사 종료시점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5% 미만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 사업 타당성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환경 영향 조사를 포함한 조사내용을 MoEMR에 제출해야 하며, 시설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CCoW 3세대 회사는 조사 종료시점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5,000 헥타르 미만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건설 단계 회사는 관련 시설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 단계 회사는 관련 시설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확정 채굴료(Dead Rent) CoW 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CoW의 헥타르 넓이와 단계를 기초로 한 연간금액 입니다.	확정 채굴료(Dead Rent) 계약 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헥타르 넓이와 광업 단계를 기초로 한 연간금액 입니다.

Production

생산 단계 중 회사는 다음의 개발관련 내용을 MoEMR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격주 통계 보고서
- 월별 통계 보고서
- 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분기 보고서
- 연간 보고서
- 기타 보고서

회사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지만, 먼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회사에 판매할 경우 제3자 거래가격이어야 합니다. 판매 계약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ontract상 도급업자는 반드시 다음의 보고서들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월별 통계 보고서
- 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분기 보고서
- CCoW 3세대의 경우, 연간 보고서

Contract 회사는 광산 자체를 운영 할 수 있거나 운영을 하청업자에 맡길 수 있으나, 아웃소싱 운영은 Contract에 적용될 수 있는 신광업법 및 PerMen 28의 법규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사는 단 한 종류의 Contract(CoW, CCA 또는 CCoW)와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산 그룹은 인도네시아에 광산 회사를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간접비는 그룹의 계약 회사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다른 회사를 통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무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Other Financial Obligations

Royalties

로열티는 실제 생산량 또는 판매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로열티는 세무상 손금인정됩니다.

Dead Rent and Land and Building Tax

회사는 Contract에 명시된 데로 확정 채굴료, 토지세, 임차료 관련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확정 채굴료는 Mining Area의 헥타르 넓이를 기초로 매년 지불되는 세금입니다. 두 종류의 세금 모두 소득세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Termination of the Contract

만약 회사는 Contract 기간 중 언제라도 Contract Area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포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세대 및 2세대 CCoW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계약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폐쇄 계획서, 지도, 계획서, 작업계획표, 기술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의무사항 충족여부가 MoEMR에게 받아들여지면, Minister는 회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ontract 포기 시, 각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재산의 매각, 이전, 처분은 Contract에 규정된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a. 기초 조사 및 탐사 기간

- 회사는 6개월 동안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은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 회사는 기간 내 수집된 모든 정보를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b.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

- 회사는 Contract Area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시장가격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의 제안은 30일간 유효하며, 만약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90일 안에 협의되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재산을 6개월 안에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무런 보상 없이 정부 소유가 됩니다.

c. 건설 기간

- 모든 조건은 '사업 타당성 기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재산을 12개월 안에 매각 및 이전시켜야 합니다.

d. 운영 기간 / Contract 만료 시

- 회사는 Contract Area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시장가격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은 30일간 유효하며, 만약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90일 안에 협의되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재산을 6개월 안에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무런 보상 없이 정부 소유가 됩니다.

Contract 포기시,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은 회사에 보상 없이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Transfer of Contracts

Purchase and Sale of Direct Interests in the Contract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CoW/CCA/CCoW 회사들은 계약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 회사는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Purchase and Sale of Shares in a Contract Company

Contract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양도할 경우의 어려움으로 인해, Contract 소유 회사의 주식 혹은 Contract 소유 회사의 모회사 주식 양도를 통해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ntract 회사 주주들은 정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운영 시작 시점 이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Contract 회사 주주들은 운영 시작 이후에 Contract 회사의 주식 양도를 위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Contract 계약 조건에 의거, 이러한 동의는 불합리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 양도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Indonesian Participants
- 주주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

Unincorporated Joint Ventures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Contracts의 지분 일부분을 양도하는 것은 드문 사례이며, MoEMR과의 협의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인트벤처 소유 및 운영 역시 드문 일입니다. Contract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 관련 법률은 조인트벤처에 대한 세법적용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인트벤처에 관한 세법적용은 조인트벤처를 구성하는 Contract의 지분양도와 함께 정부와 협의 되어야 하는 수많은 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Farm-ins

Contract 및 소득세법에는 Farm-in 관련 일반적인 사항들이 없습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광물 지역의 Farm-in은 지역 내에서의 지분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Farm-in 방식 및 조세 사항은 지분 양도의 승인과 함께 Minister가 결정할 것입니다. Farm-in은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회사의 지분양도일 경우 좀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04 인도네시아 광업 분야 세제



신광업법상 광업 프로젝트의 조세 인센티브는 IUP/IUPK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한 현행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세법 및 규정 이외의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IUP/IUPK 소유자들에게 현행 세법 및 규정을 적용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특별한 조세편의 (lex specialis)은 일반적으로 IUP/IUPK에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eneral Overview of Indonesian Tax Systems

인도네시아 현행 조세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는 PwC Pocket Tax 2013 한글판, 또는 삼일회계법인 발행 해외사업 및 투자 기본 가이드-인도네시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x Regime for an IUP/IUPK Company

General

신광업법상 광업 프로젝트의 조세 인센티브는 IUP/IUPK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한, 현행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세법 및 규정 외에서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IUP/IUPK holders에 현행 세법 및 규정을 적용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세편의 (lex specialis)은 IUP/IUPK(이미 발행된 IUPs 포함)에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UP/IUPK 소유 회사는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 번호는 Nomor Pokok Wajib Pajak ("NPWP")라고 불립니다. 또한, IUP/IUPK 회사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포함한 세금 신고를 광업 운영 지역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Corporate Income Tax

현행 소득세법 Tax Law No.36/2008 ("Tax Law")하에, 정부는 광산 비즈니스의 조세를 감독하는 정부규정(Peraturan Pemerintah)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산 비즈니스 조세에 대한 정부규정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광업 투자자들과 관련된 주요 세금 고려사항입니다.

Corporate Income Tax Rate

현행 세법 및 규정의 의하면, 기업은 과세대상 수익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세대상 수익은 총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09년 이후의 법인세율은 고정 세율로 과세대상 수익에 25%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5%의 세율 할인이 가능하며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Income

총소득은 일반적으로 광업 생산품 판매와 광산회사의 영업외수익을 포함합니다.

General Expenses

공제비용은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 유지, 징수 시 발생되고, 일반적으로 1년간 회사 운영으로 기인한 모든 지급금액 또는 미지급금액을 포함합니다.

특정 지출(기부, 직원 복지 비용 등)은 현 소득세법에 의거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부 광산현장 직원 복지비용은 광산이 원격지에 있고 DGT(국세청)의 승인 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광업 운영 경비는 자재, 서비스 하청(Contracted Service), 보험, 지적재산권 로열티, 공정 비용, 수리 및 유지비 등과 같은 경비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경비는 발생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발생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ploration and Development Expenses

탐사 및 개발 비용은 캠프 건설, 드릴링, 진입로 공사, 프로젝트 통신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현지 탐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탐사 및 광산 개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화 되어야 하며 생산기준이 아닌 지출기준에 따라 상각됩니다.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은 자산의 특질과 예상 사용수명에 의해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산 감가상각 비율은 자산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4,8,16,2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되며, 과세 대상자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Amortisation of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은 상업활동개시전비용(Pre-operating Cost), 특허, 소유권(Rights), 허가증(Licenses) 등을 포함합니다. 무형자산은 4,8,16,20년 기준으로 상각되며,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Beneficial Life가 1년 이상인 채굴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은 생산량비례법에 의해 연간 20% 이하로 상각되어야 합니다.

Carried Forward Tax Losses

세무상 결손금은 최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보통 선입선출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소급공제 될 수 없습니다.

Reclamation Reserve

회계 목적상, 광산 회사는 광구 계약기간 및 존속기간 종료 시일까지의 환경관리와 개간작업을 위한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계정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탐사단계 기간 동안에는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는 지역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는 현행 에너지/광물자원분야 법/규정에 의해 계산되며 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원가가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Mine Closure

현행 세법/규정은 폐광비용(광산 인프라, 해체 비용 등)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광은 보통 광구 수명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가 더 이상 소득을 창출시키지 못할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절세 계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규제는 폐광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광 충당부채비용은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erest Expense

세법에는 현재 과소자본과세(Thin Capitalization Limit, 차입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 최고치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급비용 제한)가 없습니다. 그러나, DGT는 이와 관련 규정을 곧 도입시킬 예정입니다.

회사간 대출에 대한 이자는 현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수 없으며,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원칙을 바탕으로 DGT에 의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단계일 시, 주주는 회사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대출조건 구조를 이전가격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주주로부터의 무이자대출은 특정 조건이 합의될 시에만 가능합니다.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모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접적으로 광업 운영에 관여하였을 시, 지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규모는 비관계회사가 같은 서비스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지불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전가격 규정 적용).

인도네시아 세무당국(DGT)은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자는 법인세신고서를 통해 이전가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특정 이전가격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DGT는 과거에 실행되지 않았던 이전가격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과세대상자는 2011년 세무신고부터, 이전가격과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며, 그에 대한 서류(이전가격 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도입된 광물/석탄 가격 벤치마크의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세무 규정은 불분명합니다. 현재 가격 벤치마크는 정부 로열티 계산시에만 적용되고 있고, 법인소득세 계산과 광산 회사 계약시 가격 벤치마크가 적용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요 석탄 인덱스는 가격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공정가액 결정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세무 실무상으로는 가격 벤치마크가 이전가격 측면의 최소 허용가능 기준이 됩니다.

Bookkeeping in US Dollars

조세목적으로, PT PMA회사(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는 US Dollar와 영어로 기장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US Dollar 기장을 DGT에 설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거나, 또는 US Dollar로 기장하는 회계연도 시작시점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기준통화를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IFRS 도입으로 인해 PT PMAs와 인도네시아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하에서 Rupiah 대신 다른 기준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장부 기장을 인도네시아 Rupiah 대신 US dollar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폐단위 전환은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함).

Tax Incentives and Tax Holidays

최근 정부는 조세 인센티브가 가능한 사업 리스트(광범위한 산업 분야와 지역을 포함)를 Update 했습니다.

광업 분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 시, Tax Incentives(조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철강 제조
- 공정
- 특정 Brass, Aluminium, Zinc, Nickel 공정
- 특정 금속 및 비금속 광석 채석

그러나 조세 인센티브는 보통 Java외 지역에서의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조세 인센티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30% 투자 소득공제
- 세무상의 조기 상각
- 배당에 대한 원천세 감소
- 결손금 기간 5년에서 최고 10년으로 전환

정부는 산업 선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최장 10년까지 소득세를 면제시키는 Tax Holiday를 도입하였습니다. 광업분야의 경우 세금감면은 일반 금속산업에만 적용되지만, 일반 금속 외의 산업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행규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세금감면은 2011년 8월 15일 이후에 허가받고 IDR 1조 자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산업 선구기업에만 해당됩니다.

Value Added Tax (“VAT”)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인도는 미리 책정된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VAT가 적용되며, 현 VAT 세율은 10%입니다.

현 VAT법은 Gold Bars, Coal, Natural Resources가 직접적으로 공급되었을 시 VA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VAT는 광산 생산품의 공정 레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석탄의 경우, DGT로부터 개별적인 규제를 받으며, 선탄 및 분쇄는 공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riquetting은 예외). 신광업법에 대한 국내 공정 규정이 정해지면 그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Gold Bars, Coal과 같은 비부가세 광산 생산품을 인도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 및 내수의 매입 VAT는 공제/환급이 되지 않고, 추가비용으로 계산되어 법인소득세 계산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제작 준비단계 시, 회사는 광산 상품 인도가 없기 때문에 매출 VAT는 없습니다. 따라서, VAT 초과지불은 회사가 조세가능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했을 시 매입 VAT를 Vendor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VAT환급은 연말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작 준비단계시, 매입세액이 발생되면 자본재(Capital Goods)에 대해서만 월단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제작 준비단계 서비스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 및 환급 불가능).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한지 3년 이내에 생산을 못할 경우(VAT가능 상품/서비스 인도), 회사는 생산 실패 시점 월말까지 환급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일부 광업 상품은 생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제한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Withholding Tax (“WHT”)

광산 회사를 포함한 납세자는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세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회사에 대한 배당, 이자, 로열티 지급은 원천세율 1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이익 잉여금에서 지급되고 광산 회사의 지분을 인도네시아회사 주주가 최소 25%이상 소유 시, 동 배당은 원천세 적용이 면제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원천세 2%가 적용됩니다.

만약 비거주자에게 지불될 경우, 현 원천세율은 20%입니다. 서비스의 원천세 지불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보통 10% 또는 15%)은 조세조약에 의해 경감될 수 있습니다. DGT는 re-determined Disclosure Form과 조세조약 부당이용 방지 등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투자 시 고려해야 합니다(현행 한인니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서비스 소득 0%, 배당 및 이자 10%, 로열티 15%임).

Tax Regime for a CoW/CCoW/CCA Company

CoW/CCoW/CCA(Contract)의 중요한 점 중 한가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입니다. 예를 들어, Contract에 특정 조세 규정이 포함될 경우, 이 규정이 현행 세법보다 우선 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Contract에 포함된 조세 규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를 기점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Contract은 계약기간 동안 조세 규정을 확정시키며(2세대 Contract은 현행 세법 규정을 따름), Contract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세 문제는 현행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Contract에 특별 조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의 이점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또는 적어도 계약 만료 시까지 조세 관련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Contract에 특별 조세 규정을 포함시킬 경우 소득세율 인하 또는 조세 인센티브 도입등과 같은 세법의 호의적인 변화에 대한 적용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은 특별 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큰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에서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광업 운영 측면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합니다.

Contract에 포함된 광업 조세 체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일부 케이스는 Contract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광업 회사와 DGT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광업법 임시규정(Article 169)은 현행 Contract이 해당 Contract의 만료시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과금 조항을 제외하고는 신광업법을 준수하도록 1년 이내에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하고, 정부가 개정하려 하는 세금 및 정부 부과금 조항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Contract 조건 수정을 위해서 정부가 개별 Contract회사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나, Contract 전체가 수정되지 않고 사례별로 개별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서술된 조세내용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Contracts 세대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모든 Contract 세대가 특정 세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현 세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조세체계 적용에 대한 검토는 같은 세대의 2개 Contract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Contract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Tax Administration of a CoW/CCoW/CCA Company

Tax Registration

Contract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납세번호 등록을 해야 하며, NPWP(납세자번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Contract회사는 광산 운영 지역세무서에 세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VAT와 원천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합니다.

Bookkeeping in US Dollars

세법상, Contract회사는 장부 기장을 US Dollars 및 영어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US Dollar 적용 회계연도 시작 최소 한달 전까지 US Dollar 기장을 DGT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화와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회사는 법인세 납부를 Rupiah 또는 US Dollar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인도네시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연간 법인세 신고서상 Rupiah 금액이 병기된 US Dollar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Income Tax

IUP/IUPK 회사와 비슷하게, Contract회사도 세무상 순이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Contract상 하단에 설명한 지출은 총수입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광물 CoWs는 특별법(*lex Specialis*)인 소득세 규정이 있습니다. CCA/CCoW의 경우, 1세대와 대다수의 3세대 계약서에는 특별 법인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2세대와 그 외의 3세대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는 소득세 계산을 위한 현행 소득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Income Tax Rate

Contract에 특정 소득세율이 표기된 경우, Contract 회사들은 2010년 이후 소득부터 인하된 법인세율 2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2008년 30%에서 인하된 것임). 일부 Contracts 세대는 감축된 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기 전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Operating Expenses

일반적으로 현행법과 같습니다.

Exploration and Development Expenses

현지 탐사 경비는 일반적으로 Contracts 지역에서의 발생연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광산 개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화되며, Contract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상각됩니다.

Reclamation Reserve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부 Contracts 세대는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Provision)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존 법인세법 및 국유 은행 예치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on Expenses

일반적으로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Asset Revaluation

장부를 US dollars로 기재하는 Contact 회사는 재무 목적상 회사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Employee Benefits/Facilities

해당 Contract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제공된 복지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혜택을 받습니다. Contract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비용은 대부분 공제 가능하지만, 직원이 복지비용을 직접 수령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Pre-Contract Expenses

Contract 회사의 주주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 및 광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지출을 합니다.

Contract은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법인 설립 전 비용을 Contract 회사로의 이전을 허용합니다. 법인설립 전 비용은 이연사전운영비용(deferred pre-operating costs)으로 인식되어, 생산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상각하여 법인세 계산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ontracts는 법인설립 전 비용을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 받아야 하며, DGT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사항에 대해 법규상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에 의해 공제가 가능하며, 세대별 Contract에 따라 다른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물, 도로, 다리, 항만과 같은 광업 인프라 자산은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인프라도 Contract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정자산은 내용연수를 기초로 종류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속상각률(Accelerated Depreciation)은 Contract지역에 소재한 고정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oW/CCA 이전의 세대인 경우에는 보통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 Deduction, i.e. Hypothetical Depreciation)를 규정하며, 자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상 고정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특정 Contract에는 광구 수명이 자산의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광구 수명이 만료된 시점에 자산의 나머지 장부가치를 전부 상각할 수 있습니다.

Amortisation of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은 사전운영비용, 특허, 소유권(Rights), 허가증(Licenses)등을 포함합니다.

생산 이전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유효수명이 1년 이상이며, 일부 Contract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생산 시작 후 자본화 및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Contract 회사 주주에 의해 발생된 법인설립 전 비용도 포함합니다.

Interest Expense

대다수의 Contract에는 공정한 거래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며, 채무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Contract에 명시된 비율을 넘겨선 안됩니다.

현 세법상, 회사간 대출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부 Contract은 이자 공제를 요청하기 위해 승인된 자본금(Authorized Capital)을 전부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arried Forward Tax Losses

Contract상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세법상, 이월이 5년보다 적거나 혹은 많게 이월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VAT

일부 Contract의 경우 현 VAT 규정과 다른 VAT 체제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al 또는 Gold Bars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매입 VAT가 공제/환급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작 준비 단계시, 회사는 광업 상품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매출 VAT는 없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 광산 회사들은 그 당시 세법 규정에 의해 VAT Collector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산 회사는 하청업체(Vendor)에 의해 청구된 VAT 지급을 하청업체에 하지 않고 재무부에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일부 Contract 회사들은 Contract에 의해서 VAT Collector의 지위를 갖습니다.

Contract상 세무 규정에 의해 회사는 지불한 매입 VAT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Contract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VAT 환급에 대한 여러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VAT 환급을 요청하기 전 분쟁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VAT는 Rupiah로 표시되며, 회사가 US Dollars로 회계처리 할 경우 VAT에 대한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HT

Contract 회사는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세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율은 Contract에 명시된 세무 규정, 서비스 종류, 서비스 공급자의 거주 및 비거주에 의해 정해집니다.

비거주 설립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원천세 경감이 가능합니다(현행 세법의 원천세율은 20%임). 일부 Contracts는 대다수의 조세조약상의 경감세율보다 낮은 0% 또는 7.5%의 원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Import of Capital Equipment

대부분의 Contract은 상업적 생산 시작 후부터 특정 기간 동안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VAT 및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Master-list Facility). 그러나, 일부 Contracts 세대는 이러한 수입관련 조세혜택(Import Facility)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Contract 또는 IUP/IUPK하에서 수입 조세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일반법에 의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수입 관세 면제 및 수입 VAT는 특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

Non-Tax State Revenue

Royalties

로열티는 Contract에 명시된 내용이나 IUP/IUPK holders의 현 규정에 따라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분기마다 정부에 지급합니다. 로열티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Dead Rent

Contract 또는 IUP/IUPK 유효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Dead Rent)를 매년 납입해야 하며, 금액은 Contract/License에 명시된 지역 규모와 광업 운영 단계를 기반으로 계산 됩니다(기초조사, 탐사, 개발단계마다 요율이 다름).

Regional Tax

광산회사는 지방세와 벌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관련 지방정부에 의해 세율이 1.5%부터 35%까지 결정됩니다. Contract 체결 시점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방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지방세 종류 요약 설명은 Appendix A를 참고하십시오.

Transfer of Mineral Interests

Purchase and Sale of Mining Interests

직접적인 Contract 양도는 제한 받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Contract의 양도는 여러 복잡한 세무 이슈들이 있으므로, 전체 또는 일부 소유권 이전은 Contract 또는 IUP/IUPK 소유 회사들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2008년 세법에는 광산회사의 광산 지분 이전, 자금 조달 참여, 또는 자본 투자에 의한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8년 소득세법에서 정부는 광업 분야에서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별도의 정부규정(GR)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규정은 광산 지분 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지만, 광업 분야 소득세 계산을 위한 특정 정부규정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도인은 광산 지분 매각의 수익을 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유형자산 취득비용 공제 규정에 의해 취득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ontract 양도에 대한 일부 세금 이슈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비용 없이 유형자산(광산 인프라 장비)과 무형자산(이연탐사지출(Deferred Exploration Expenditure))의 양도가 이루어 지도록 세법이 규정되어야 하며, 매각 시에 일어나는 세무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검토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Purchase and Sale of Shares in an IUP/IUPK or Contract Company

인도네시아에서의 광업권 인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지분의 매각은 과세대상이며, 매도자가 거주자일 경우 매각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도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 또는 상장회사의 매각이 아닌 한, 양도차익의 5%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8년 소득세법은 "광의의(Long-arm)" 자본이득 과세(Capital Gain Tax)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DGT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도관회사 또는 특수 목적 회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 또는 자회사의 지분 매각에 대하여 이를 인도네시아 내 회사의 주식 매각거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GT는 매각대금의 5%를 Final Tax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 및 추가적인 사항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세피난처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조세피난처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일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Investment Structuring

세무효율적 투자구조(Tax Efficient Investment Structure)는 광산의 유효 수명 동안 대규모 절세효과를 내어 광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광산업 투자 초기에는 면밀한 투자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구조 검토 시알고 있어야 할 Contract 및 IUP/IUPK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단 하나의 Contract 또는 IUP/IUPK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Ring Fencing 조항은 연결납세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특성과 함께 철저한 Tax Planning을 요구하며, 특히 그룹 내에서의 광업 서비스 이용, 회사간 청구금액, 회사간 대출 등의 경우 면밀한 사전 검토를 요합니다.
- 세무효율적 투자구조(Tax Efficient Investment Structure)를 이용하여 과실송금 및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프로젝트 실행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일부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의 원천세가 감면 가능)
- 조세조약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한, 외국 투자자에 의한 인도네시아 비상장 Contract 또는 IUP/IUPK회사의 지분 매각은 총 매각대금의 5%가 과세 됩니다. 투자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 일부 Contract경우, 외국 주주가 설립자일 경우 배당에 대한 원천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세무효율적 프로젝트파이낸싱(Tax Efficient Project Financing) 전략 사용 또는 그룹 내부 파이낸싱의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고려해야 하며,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는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입니다.(탐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투자 초기 단계에서 Target 광산회사의 재무/세무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05 광업 투자 추가 규제 사항



광업투자에 영향을 주는 기타 규정으로 투자법, 산림법, 환경법 및 관련 규정, 에너지 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주요한 비즈니스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

Investment Law

Law No.25 of 2007("Investment Law")는 사업 허가를 One-Stop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가장 최근 투자법입니다. 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청 -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or "BKPM")에게 투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Investment Law No. 25에 의거 LLC("PT")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인력의 우선사용
-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용
- 자연 보호

투자자의 비재생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환경적 타당성(Environmental Feasibility)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현장 복구 펀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Investment Law(기업사회책임부분 포함)를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사업 허가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에 의해 국유화가 필수적이지 않은 이상, 중앙정부는 국유화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로열티, 배당금, 대출금 상환, 투자 및 관리체계 매각, 기술 서비스 수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외화로 자유롭게 이체 및 본국에 송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Forestry Law

지리학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산림을 포함한 양질의 토양이 풍부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이용, 특히 산림보호구역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됩니다. 광업 지역은 보통 산림 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산림규정에 의해 광업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9년 Law No. 41("Forestry Law")의 개정령인 2004년 Law No.19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노천광산을 13 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산회사가 산림법 도입 이전에 계약했을 경우, Presidential Decree No.41/2004에 의해 규정됨).

2010년 GR No. 24와 최근 2011년 3월 30일에 발행된 Minister of Forestry Regulation No.P18/Menhut-II/2011에 의하면, 산림청(Ministry of Forestry)의 'Borrow-and-Use' 허가를 획득할 경우, 생산산림구역 및 보호산림구역 모두에서 비산림활동을 위한 산림 지역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보호산림구역('Protected Forest')에서의 광산 활동은 몇 가지 조건하에 지하탄광만 가능합니다(노천광산 제외). 생산산림구역('Production Forest')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탄광 및 노천광산 활동 둘 다 허가됩니다. 보존산림구역('Conservation Forest')에서의 광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림지역을 광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배상이 필요로 하며, 토지배상 또는 금전적 배상으로 해야 합니다. 일부 제한적인 기초조사 및 탐사활동은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Borrow-and-Use' 허가 소유자는 비조세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토지의 사용이 중단되면 이와 동시에 조림에 착수해야 합니다.

산림지역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산림청에서 승인합니다.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환경 보호 및 자원 보존과 자립적인 광산업 유지 사이에서의 균형은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환경 보호는 다양한 법, 규정 및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위반 시 벌금 및 처벌을 받으며 극단적인 경우 License 또는/혹은 Permit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환경법은 Law No. 32 of 2009 ("Environmental Law")에 의해 갱신 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전략적 환경 분석을 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 개발이 특정 지역의 발전에 융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광업법 및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 및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천연자원의 개발을 수행하는 광산 회사는 환경 영향 평가, 관리 및 감시 계획을 포함한 '환경 영향 계획 문서' - Environmental Impact Planning Document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or AMDAL)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MDAL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환경 관리 준수 문서 - An Environmental Management Effort Document,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UPL) and Upaya Pengawasan Lingkungan (UKL)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환경법 위반은 3년에서 15년 구금 혹은 Rp 100 Million에서 Rp 750 Million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 적용과 생산비 증가로 인한 타임래그(Time Lag) 때문에 환경품질관리(배기가스 및 폐수 온도 레벨)가 최근 산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oEMR은 현재의 생산 레벨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환경법의 적용을 2년 연기하도록 제안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환경법 연기에 관련한 결정사항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nergy Law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관리 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Law No. 30 of 2007에 의하면, National Energy Council은 정부기관으로서 국가 에너지 규정을 디자인 및 제작하고,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결정하며, 에너지 위기 상황 시 절차를 결정하고, 에너지 필드에서의 규정 적용을 감시합니다.

Other Regulations Related to Mining Operations

인도네시아 광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다른 관련 규정은 지하수 사용 규정, 고정자원으로부터의 공기 오염 통제 가이드라인, 수질 및 오염 규정, 폐유 규정 및 생산을 위한 화학품 저장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금 및 형벌을 받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License/Permit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rvice Providers to the Mining Industry

광산회사는 일반적으로 탐사 및 평가, 개발, 운영, 폐광 및 복구와 같이 4개의 운영단계가 있습니다. PerMen24 규정 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는 외부업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Exploratory Drilling and Sampling
- Infrastructure Construction
- Contract Mining and Overburden Removal
- Hauling and Barging

신광업법 및 PerMen 28/24 규정에 의거, 인도네시아 기업만이 광업 License Holder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4 종류의 광업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ploratory Drilling and Sampl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ntract Mining and Overburden Removal	Hauling and Barging
규정	Law 25/2007 PR 36/2010 Law 4/2009 PerMen 28	Law 25/2007 PR 36/2010 Law 4/2009 PerMen 28	Law 25/2007 PR 36/2010 Law 4/2009 PerMen 28	Law 25/2007 PR 36/2010 Law 4/2009 PerMen 28
투자 License 발행기관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비즈니스 License 발행기관	에너지 광물 자원부	Construction Services Development Agency	에너지 광물 자원부	- Minister of Transport - 에너지 광물 자원부, 주지사, 시장(서비스 지역에 따라 다름)
비즈니스 License 기간	3년(연장 가능)	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3년(연장 가능)	- 제한 없음 (교통부 승인) 3년(연장 가능, 에너지광물자원부 승인)
외국인 최대 소유권	최대 100%	- 기자재구매 서비스(95%) - 대규모 건설 도급업 및 컨설팅 (55%) - 소/중 규모 건설 도급업 및 컨설팅 (지역 소규모 회사만 해당) - 건설회사는 대리인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컬회사와 합동 운영되어야 함	- 최대 100% - 소/중 규모 굴착, 땅 고르기, 광업을 위한 부지 준비 (지역 소규모 회사만 해당)	- 강, 호수 등에서의 수상 운송 시설 (49 %) - 특정 물품, 화물 중장비 (49%) - 터미널 지원 서비스 (49%) - 국내외 해상 운송(49%) - 육상 운송 렌탈 (지역 투자자만) - 최대 100%, 일반적인 광업 서비스 회사가 설립되었을 경우
조세	현행법	현행법 (최종 분리과세)	현행법	현행법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Contractor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역 개발(CD)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법 Corporations Law (UU PT) no 40/2007 Article 74에 의하면, 자원관련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PT 회사들은 CSR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지출 계획안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SR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 규정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는 어떠한 정부규정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Processing

신광업법 하에서 광산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PT Smelting(Copper Smelter and Refinery in East Java)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에서 Downstream Processing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Downstream Processing	
규정	Law 25/2007, PR 36/2010, Law No.4/2009, PerMen 7/2012
투자 license 발행기관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비즈니스 license 발행기관	지역에 따라서 MoEMR/Governor/Mayor가 결정함
비즈니스 license 기간	3년 (연장 가능)
최대 외국인 소유권	100%
조세	현행법

정부는 철광석 공정, 철 가공, Aluminum 용광로 생산, 구리판/와이어 생산, 구리막대 추출, 구리튜브/파이프/막대 생산, 니켈 습식 제련, 아연 정제 관련 Downstream Processing 회사에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는 확장된 프로젝트만 해당). 인센티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년 동안 승인된 설비투자액에 대한 투자소득공제 30% (매년 5%씩)
- 가속상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일반 비율보다 2배 높음)
- 비거주자인 주주 배당에 대한 원천세 10% 감면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최고 10년까지)

Mining Infrastructure

Greenfield 광업 프로젝트는 자본집약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산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며(운송/진입 도로, 철도, 컨베이어, 발전소, 캠프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Washing & Crushing 시설, Ship Loader), 때로는 원격지에 위치해 있으며 급수/환적 설비와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인프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s a Separate Business

	항구	도로	발전소	철도
규정	Law 17/2008 Law No.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77/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Presidential Regulation No. 61/2009	Law 38/2004 GR 34/2006 GR 8/1990 GR 40/2001 GR 15/2005 Law No.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77/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Law No. 30 year 2009 GR 3/2005 GR10/1989 Law No.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77/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Law No. 23 year 2007 Government Regulation No. 56/2009 Law No.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77/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투자 License 발행기관	BKPM 항만 비즈니스는 항만 관리 기관과 동의를 한 회사가 수행할 수 있음	BKPM	BKPM	BKPM
비즈니스 License 발행기관	교통부 산하기관인 Port Authority에 의해 Port Operating Licence 승인 Sea Port Operating Licence 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합니다. - Minister for Main Port and Hub Port - Governor or Mayor/Regent for Feeder Port Lake/River Port Operating Licence는 Mayor/ Regent가 발행	Minister of Public Works 정부의 면허 허가 승인	비즈니스/전력 발전소 위치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 주지사, 시장이 발행	철도 범위 구역에 따라 교통부, 주지사, 시장이 발행
비즈니스 License 기간	Port Authority의 면허 허가 승인에 표기된 기간	Ministry의 면허 허가 승인에 표기된 기간	운영 Licence에 대한 특정한 기간 제한 없음	- Railways Infrastructure Operational License: Ministry, 주지사, 시장의 면허 승인 - Railways Facility Operational License 5년 (연장 가능)

License 양도	No	Yes, 해당 처부의 승인 하에 가능함	규정 안됨	규정 안됨
외국인 최대 소유권	- 항구시설 (49%) - 하역장 (49%) - 리셉션 시설 (49%) - 항구 비즈니스 (제한은 없지만 정부규정 제안에는 최고 49%로 되어 있음)	95%	- 전기발전소 장비의 개발 및 설치(95%) - 장비 유지 및 운영(95%) - 장비기술 개발(95%) -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송전 및 배전 (95%) - 발전소 최고 10MW	해당사항 없음
토지 권리	Port Authority가 승인 Port Authority가 승인한 면허 내용을 기초로 비즈니스 수행	정부의 면허허가 승인	Hak Guna Bangunan (Right to Use Land for Erecting Building)에 의해 법적 권리를 회사에 80년간 양도	정부의 면허허가 승인에 따라 다름
정부 수수료	면허허가 승인에 의해 규제	규제 안됨	송전 및 배전 시설의 비과세 정부부담금	규제 안됨
조세	현행법	현행법	현행법	현행법
기타 이슈	Law 17/2008은 GR에 의해 좀 더 명확한 시행규제가 적용될 것이라 약정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항만 운영관련 규정은 없음	유료도로 비즈니스에서만 가능함	추가적인 GR이 발행되지 않았음	Ministry Regulation의 추가적인 구체적용을 기다리고 있음

As Part of Mining Business

	특수항만/ 터미널	도로	발전소	철도
규정	Law 17/2008 Law 4/2009 Presidential Regulation No. 61/2009	Law 38/2004 GR 34/2006 GR 8/1990 GR 40/2001 GR 15/2005 Law 4/2009	Law 30 /2009 GR 3/2005 GR10/1989 Law 4/2009	Law 23/2007 Government Regulation No. 56/2009 Law 4/2009
비즈니스 License 발행기관	교통부	- Regency내에 위치할 경우, 시장/regency가 발행 - 주 내에서 regency가 2곳 이상일 경우, 주지사가 발행 - 주가 2곳 이상일 경우, 에너지광물 자원부에서 발행	- Regency내에 송전일 경우, 시장/regency가 발행 - 주 내에서 regency간의 송전일 경우, 주지사가 발행 - 전국적인 송전일 경우 Ministry가 발행	철도 범위 구역에 따라 Ministry, 주지사, 시장이 발행
비즈니스 License 기간	5년(연장 가능)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음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음	Ministry Regulation에 의해 추가로 규정될 것임
토지 권리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기타 이슈	최단거리에 있는 항구가 특수 항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승인.	없음	없음	Ministry Regulation의 추가적인 구제적용을 기다리고 있음

Append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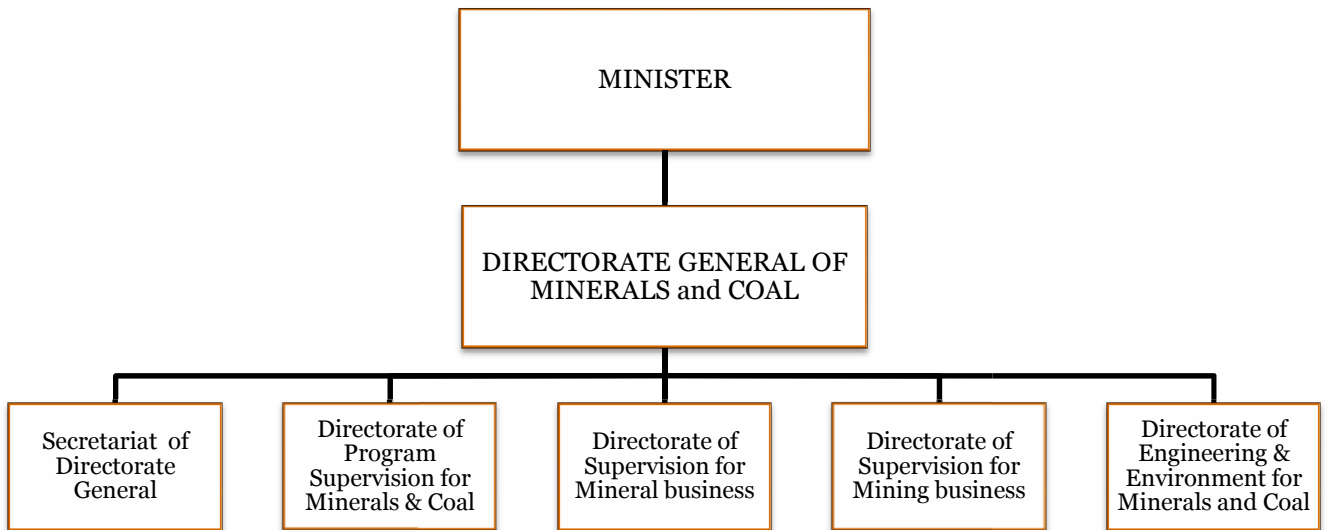


Appendix A. 지방세

하단의 테이블은 광산업 관련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종류	최대 관세	현 관세	산출 방식
A. 주세 (Provincial Taxes)			
1. 자동차 및 중장비 세금	10%	개인 차량	
		첫 번째 차량 소유 시 1%-2%	판매 가격 및 Weight Factor (Size, Fuel, Type, etc.)를 참조해서 계산되며, 정부는 계산 가능하도록 관련 테이블을 발행함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차량 소유 시 2% - 10%	
		0.5% - 1% - Public 차량	
		중장비 차량 0.1% - 0.2%	
2. 자동차 명의변경 비 (Above-water Vessels and Heavy Equipment)	20%	자동차	
		20% - 첫 번째 명의변경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명의변경 시 1%	
		중장비	
		0.75% - 첫 번째 명의 변경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명의변경 시 0.075%	
3. 자동차 연료 세금	10%	Public 차량: 개인차량 연료에 대한 세금보다 최소 50% 낮음.(지역에 따라 다름)	연료 판매 가격(휘발유, 디젤, LPG)
4. 지하수 및 지표수 사용에 대한 세금	10%	지표수에만 관세 적용	수도의 구입가격(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결정됨)
B. 지방세(Regency and Municipal Taxes)			
5. 가로등에 대한 세금	10%	산업 사용 3%	전기료
		개인 사용 1.5%	
6. 비금속 및 암석에 대한 세금 (Formerly C-Category Mined Substance Collection)	25%	지역적으로 다름	
7. 지하수 세금	20%	지역적으로 다름	구입가
8. 토지세 및 임차료 세금	0.3%	지역적으로 다름	특정 종류의 토지 및 건물에만 해당
9. 토지 및 건물 권리 취득세	5%	지역적으로 다름	토지 및 건물 매매가

Appendix B. 에너지광물자원부



Appendix C. 산업 연합



인도네시아 광업 협회

May 1975. IMA 는 비정부, 비정치적, 비영리 국가 광업기구로서, 1975 년 5 월 29 일 Jakarta 에서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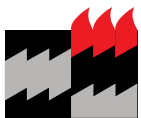
회원자격은 인도네시아 광산업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합회는 멤버들을 위한 광업 관련 강연 및 세미나를 열고, 인도네시아 광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최하며, 광업관련 정보 발행물을 발간하며, 국내외 인도네시아 광산업을 대표하는 등, 정부와 광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IMasean Federation of Mining Associations (AFMA) 협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MA 의 목적 및 목표는 광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 탐사, 광업, Beneficiation and Metallurgical 측면에 대한 비전매 특허(Non-proprietary) 및 Non-Confidential 정보를 전파합니다.

- a) 광산업 개발 조성
- b) 노하우 및 전문지식 교류 활성화
- c) 광산 비즈니스 및 기술을 홍보를 위한 세계 광산 협회와의 협력

협회는 현재 120 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ASOSIASI PERTAMBANGAN
BATUBARA INDONESIA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인도네시아 석탄 산업 협회

2004. ABPI/IVM 는 비정치적, 비영리를 기반으로 석탄 산업 분야 기업을 위한 단체입니다. APBI-ICMA 는 1990 년 9 월 20 일에 설립되었고, 10 월 16 일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APBI-ICMA 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석탄 산업 분야에 폭넓은 참여할 수 있게 비즈니스 환경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간의 소통 및 자문을 촉진시키고, 정부와 석탄 산업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APBI-ICMA 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른 협회, 기업, 또는 관련 국내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APBI-ICMA 는 50 개 이상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Appendix D. Glossary

Term	Definition
AMDAL	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I	Bank of Indonesia
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Indonesia's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CCA	Coal Co-operation Agreement
CoW	Contract of Work
CCoW	Coal Contract of Work
CD	Community Development
Contracts	CoW/CCoW/CCA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DGoMC	Director General of Minerals and Coal
DGT	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
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Forestry Law	Law No. 41 of 1999 as amended by Law No. 19 of 2004
GDP	Gross Domestic Product
Gol/Government	Government of Indonesia
GR	Government Regulation
GR22	Government Regulation No.22 of 2010, dated 1 February 2010
GR23	Government Regulation No.23 of 2010, dated 1 February 2010
GR24	Government Regulation No.24 of 2012, dated 21 February 2012
GR55	Government Regulation No.55 of 2010, dated 5 July 2010
GR78	Government Regulation No.78 of 2010, dated 20 December 2010
Ha	Hectare
IPR	Izin Pertambangan Rakyat (People's Mining Licence)
ITO	Indonesian Tax Office
IUJP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Mining Services Business Licences)
IUP	Izin Usaha Pertambangan (Mining Business Licence)
IUPK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KP	Kuasa Pertambangan (Mining Right)
Minister	Minister of the MoEMR
Mining Law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4 of 2009
Mo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F	Ministry of Finance
NEP	National Energy Policy
NPWP	Nomor Pokok Wajib Pajak (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
PE	Permanent Establishment
PerMen 7	Regulation of the MoEMR No. 7/2012, dated 6 February 2012
PerMen 17	Regulation of the MoEMR No. 17/2010, dated 23 September 2010
PerMen 28	Regulation of the MoEMR No. 28/2009, dated 30 September 2009
PerMen 34	Regulation of the MoEMR No. 34/2009, dated 31 December 2009
PMA	Penanam Modal Asing (Foreign Investment Company)
PT	Limited Liability Company
PTBA	PT Tambang Batubara Bukit Asam (Persero) Tbk
PwC	PwC refers to a network of member firms of PwC Internation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SKT	Surat Keterangan Terdaftar (Registration Letter for non-core mining services business)
VAT	Value Added Tax
WHT	Withholding Tax
WP	Wilayah Pertambangan (Mining Area)
WPN	Wilayah Pencadangan Negara (State Reserve Area) WPR
WPR	Wilayah Pertambangan Rakyat (People's Mining Area)
WUP	Wilayah Usaha Pertambangan (Commercial Mining Business Area)

Contact Point

삼일회계법인 글로벌서비스 본부
김홍현 이사
+82 2 709 3320
hhkim@samil.com